

협력사 행동규범

(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)

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, 본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와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시,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, 인권 존중, 환경 보전 및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와의 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본 규범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와 지속해서 소통합니다.

인권 및 노동

1. 차별 금지

- ① 협력사는 근로자가 성별, 인종, 피부색, 국적, 민족, 출신지역, 장애, 나이, 가족관계(혼인 등), 임신 및 출산, 사회적 신분, 종교, 학력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.
- ② 협력사는 채용 및 고용 관행,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

2. 아동노동 금지

- ①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 측면에서 고위험 작업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, 초과 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합니다.

3. 강제노동 금지

-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신적,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

구속(채무변제, 여권 보관 포함)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.

-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며 근로가 자발적일 것을 보장합니다.

4. 근로시간 준수

- ① 협력사는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

5. 인도적 대우 및 가혹 행위 금지

- ① 협력사는 사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서며,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,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, 언어폭력을 포함한 비인도적 대우 및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.

6. 결사의 자유

- ①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안전 보건

1. 안전보건경영

-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 정보의 게시, 안전 보호구 및 장비 제공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, 조치 및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, 위험에 대한 노출을 통제합니다.

2. 비상상황 대응

-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, 집단감염,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 또한,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, 대응, 후속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
환경

1. 환경경영

-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 위해 요소를 식별 및 정의하고,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

2.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

- ① 협력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산출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3. 오염물질 배출 관리

- 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,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4. 수자원 관리

- ①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5. 폐기물 관리

-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윤리

1. 투명경영

- ① 협력사는 뇌물수수, 부패행위, 불공정 행위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2. 개인정보 보호

- ① 협력사는 사업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, 개인정보의 수집, 보관, 처리,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3. 지역 사회

- ①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대지 사용, 소음, 대기질, 폐수 등의 민원을 예방 및 조치하며,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.

4. 정보 공개

- ① 협력사는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투명하게 공개하고, 내외부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여, 이해관계자의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.

5. 이해상충 방지

- 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, 제안, 허가,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 여기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,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

2024. 12.

주식회사 스마일푸드 대표이사 손희영